

공 시 송 달 공 고

민법 제760조에 의거 구상금을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압류통지)고지 등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구상금 체납자 압류예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민법 제760조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17.07.21.~2017.08.04.(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결의번호	성 명	주 소	부과금액(원)	징수 과목명
131005257 외 1건	성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42번길 *** (감천동)	57,597,710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5.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인근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51-559-3258]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7월 21일

부 산 지 방 우 정 청